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2025. 9. 30

관계부처 합동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요약)

I 추진 배경

-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제약**
 -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사업주**를 **처벌대상**으로 판단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미흡**
 -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23.2월) "한국에서는 CEO의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 사업을 총괄하지 않더라도 CEO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
 - 민생의 중심인 **자영업자·저소득층**의 경우 **형벌규정 미인지, 오인, 단순신고 누락**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존재
-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25.8.1.~), 자체 개선과제 발굴 중

II 추진 방향

- 1년 내 전부처 소관법률 중 **형벌 관련 규정 30%^{목표} 정비**
 -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연내 개선안 마련** 추진
- ①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해소**하고, ②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
 - ① **배임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양벌규정 정비** 등 **선의의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
 - ② 형벌이 아닌, **징벌적 과징금** 또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
 - ③ 대체로 **생활밀착형**인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형벌보다는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
 - ④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로 전환

◇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우선 신속 추진이 가능한 기업·국민 현장체감형 과제를 **1차로 마련·발표**

Ⅲ 세부 추진방안

◇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과제 중심으로 선정

※ ①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②형벌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③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전환, ④ 先행정조치-

後형벌부과, ⑤기타 등 총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선과제 발굴

↳ 110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추진

※ 법리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는 ①, ② 유형 과제는 주로 2차 방안 발표시 포함 추진

1] (선의의 사업주 보호) 배임죄 개선과 함께, 양벌규정 입법 미비 해소

→ 배임죄 외, 3개 규정 합리화

○ (형법^{법무부}) 배임죄 폐지 및 대체입법(요건 명확화 - 처벌범위 축소) 마련 추진

○ (최저임금법^{노동부}) 現양벌규정에 면책규정 미비(위헌가능성) → 改양벌규정에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

◇ 추후 전부처 양벌규정을 전수 조사하여, 행위자 외 법인·사업주를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 폐지 등도 검토할 계획

2] (금전적 책임성 강화) 형벌을 완화하고 피해자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 부과 → 3개 규정 합리화

○ (선주상호보험조합법^{해수부}) 조합 임원이 조합 이익을 부당배당시

現징역 7년→**징역 3년 + 손해책임**(손해액 2배이내) 도입

- (지능형로봇법 **산업부**) 배달로봇(실외이동로봇)의 부품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 없이 개조시 現징역 3년→**과징금 5천만원***

* 기업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과징금 한도는 기존 벌금(3천만원) 대비 상향

- ③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전환)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 → 68개 규정 합리화

- (자동차관리법 **국토부**)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에 대해 미승인시 現징역 1년→**원상복구명령+ 과태료 1천만원**

- (공중위생관리법 **복지부**)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의 상호명 등 변경신고 등을 안한 경우 現징역 6개월→**과태료 1백만원**

*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등은 상호명·대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 감안

- (채무자회생법 **법무부**) 파산상황에 대한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안한 경우 現징역 1년→**과태료 1천만원**

※ 다만, 허위 설명의 경우 형벌(징역 최대1년) 유지

- (여객자동차법 **국토부**) 차량사고 후 렌트업자가 대차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정비업자에게 알선수수료 제공시 現징역 1년→**과태료 5백만원**

* 렌트사용자에게 렌트업체 선택권한이 있는 점 등 감안(중기중앙회)

- (근로기준법 **노동부**) 근로계약 체결시 종사업무 등 단순명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現벌금 5백만원→**과태료 5백만원**

* 임금, 근로시간 등 서면교부 의무사항과 달리 취업 장소 등은 단순명시 사항

※ 서면교부 의무 위반은 형벌(벌금 5백만원) 유지

- (비료관리법 **농식품부**) 습기, 마찰 등으로 비료 포장지 제품명 등 경미한 사항이 훼손된 경우 現징역 2년 →**과태료 2백만원**

○ (수산물유통법^{해수부}) 수산물 유통업자 등이 수산물 이력추적 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現징역 1년 →^改과태료 1천만원

○ (신용정보법^{금융위}) 개인신용평가사 등이 개인신용정보 수집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現징역 1년 →^改과태료 1천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상 기록보존의무는 과태료 대상이며 개보법도 과태료 부과 중

4]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형벌 필요성이 있더라도 행정제재를 통해 입법목적 달성 가능시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18개 규정 합리화

○ (공정거래법^{공정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가격 등을 부당하게 결정한 경우 現징역 3년* →^改시정조치명령 미이행시 형벌

* 현재 징역 3년을 바로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부과 가능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페인트 제조업체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보관창고 운영시 現징역 3년 →^改개선명령 미이행시 형벌

* 설비 설치, 시설보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개선 명령이 효과적

○ (여객자동차법^{국토부}) 버스업체 등이 인가없이 노선 변경 등을 한 경우 現벌금 1천만원 →^改시정조치명령 미이행시 형벌

5] (기타)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 제형벌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 형벌 폐지 → 18개 규정 합리화

○ (식품위생법^{식약처}) 급식소(일반 50인·산업체 100인 이상) 운영자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現징역 3년 →^改징역 1년

○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 금속가공업체 등이 분쇄기 등 소음·진동배출시설 미신고시 現징역 6개월·벌금 5백만원 →^改벌금 5백만원(징역폐지)

* 영세사업자의 경우 환경 관련 인력·전문성이 부족한 점 감안

※ 다만, 거짓 신고의 경우 형벌(징역 ^{최대}6개월) 유지

IV 향후 계획

- 1차 개선안 일괄개정 절차 진행 → 정기국회에 입법안 제출
- 10월 이후 추가 개선방안 마련

순 서

I. 추진배경	1
II. 추진방향	2
III. 세부 추진방안	4
1. 선의의 사업주 보호	4
2.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5
3.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전환	6
4. 행정제재 중심의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11
5. 기타	13
IV. 향후 계획	14

I. 추진배경

- (배경) 과도한 경제형벌로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제약
 -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형벌*은 6,000여개로, 범죄·처벌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
 - * 기업·국민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위반 등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사업주를 처벌 대상으로 판단하는 등 주요국 대비 사업주(경영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지속
 -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23.2월) "한국에서는 CEO의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 사업을 총괄하지 않더라도 CEO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
 -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미흡
 - 민생의 중심인 자영업자·저소득층의 경우 형벌규정 미인지, 오인, 단순 신고누락 등 경미한 범위반에도 처벌 받는 사례도 존재
- (경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형벌 규정 전면 재검토

-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 중*('25.8.1.~)
 - * 기재부·법무부 차관(공동단장),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 전부처 경제형벌 전수조사* 및 자체 개선과제 발굴 진행 중
 - * 전부처 경제형벌은 500여개 법률, 6,000여개로 파악
- 현장체감도가 높은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경제계 및 법조계 의견 등도 수렴
-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민주당, '25.9.2일 출범)」와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향 등에 대해 협의

II. 추진방향

① (목표) 1년 내 전부처 소관법률 중 형벌관련 규정 30%^{목표} 정비 추진하되,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선정

② (기본 원칙) ①책임성, ②시의성, ③보충성, ④형평성·정합성, ⑤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에 근거하여 정비 대상을 검토(☞ 참고 1)

① (책임성) 책임주의 원칙에 근거할 때 형벌이 과도한지 여부

-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양벌규정 등으로 형벌을 부과하는지 검토

② (시의성) 시대변화로 형사처벌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지 여부

- 기술·제도 발전, 국민인식 변화 등 입법환경이 변화했으나, 경제형벌은 개정되지 않는 등 형벌존치 필요성* 검토

* 예) 절차적 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최근 처벌 사례가 없는 경우 등

③ (보충성) 행정제재 등 형벌 외 수단으로 법익 보호 가능성 검토

- 형벌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 성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형벌이 개입될 필요

* 행정형벌의 목적·기능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사후적 조치 → 법률 내 구비된 행정조치(시정명령 등) 부과만으로 행정상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 원칙상 형벌 폐지

↳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벌이 공존하는 경우 원칙상 형벌 폐지

④ (형평성·정합성) 유사 입법목적의 다른 법률조항과 비교하여 형벌수준이 과도한지 점검

- 입법목적이 유사한 경우 법률위반에 따른 형벌 수준도 균형을 이뤄야 하는 만큼, 형평성·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지 검토

* 동일유사한 행위에 대한 타 법률 내 형벌보다 과중한 경우 적정 수준으로 형벌 완화

⑤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사처벌 수준의 적합성 검토

- 주요국의 사전규제, 사후처벌, 기업문화, 비형벌적 제재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국내 형벌조항이 과도한지 검토
- 특히, 국제적으로 과도한 형벌 수준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

③ (정비 방향) 사업주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되, 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민생경제 부담은 경감되도록 형벌 합리화

- ① 사업주의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입법미비가 존재하는 양벌규정 등을 정비
- ② 위반 즉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벌보다 위법행위 억제에 효과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책임성 강화 추진
- ③ 생계형 업종 등에 적용되는 경미한 위법행위*로 자료보존·표시·보고의무 등 형벌 부과 필요성이 낮은 경우 과태료 부과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내 과태료 부과대상 18개 유형 행위 등

- ④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법익·수준 등을 감안할 때 형벌 존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도, 행정조치 만으로 법익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

◇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우선 신속 추진이 가능한 기업·국민 현장체감형 과제를 1차로 마련·발표

Ⅲ. 세부 추진방안 (대표과제 중심)

◇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과제 중심으로 선정

※ ①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②형벌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③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전환, ④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⑤기타 등 총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선과제 발굴

➔ 110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추진

※ 법리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는 ①, ② 유형 과제는 주로 2차 방안 발표시 포함 추진

1 선의의 사업주 보호

◇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보 우려가 지속

⇒ 그간 기업경영활동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지적된 배임죄를 개선하는 한편, 양벌규정에 대한 입법 미비도 해소

➔ 배임죄 외, 최저임금법의 3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① (형법) 배임죄 개선안 마련 (법무부) (☞ 참고 2) 대·중·소기업

○ (현황)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판례 분석*) '25. 8월경부터 배임죄 1심 선고 판례 약 3,300건 분석

▪ 기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다수 의율, 그 외 민사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유형도 다양*

* 기업 임·직원, 교회·종중·학교·조합·비법인사단·입주자회의 등 대표, 공무원, 계주, 채무자, 부동산 매도인, 백화점 직원, 미성년후견인 등

▪ 다만, 기업과 무관한 민생 분야, 사업기회 유용·가상화폐 범죄 등 새로운 경제범죄 유형에도 배임죄가 적용

⇒ 배임죄 개선 필요하나, 중요범죄 처벌 공백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개선내용) 기업의 자율성·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 마련

→ **배임죄 폐지 및 대체입법(요건 명확화·처벌범위 축소)** 마련 추진

※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입법 마련 예정

② (최저임금법) 양벌규정에 **선의의 사업주 면책규정** 마련 (노동부)

대·중·소기업

○ **(현황)**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미비

* ①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미준수(최임법 제28조 제1항), ②근로감독관이 수급인의 최저 임금 미준수시 도급인에게 시정지시를 명령하였으나 미이행(최임법 제28조 제2항) ③임금지급 주기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조의견 미청취(최임법 제28조 제3항)

⇒ 면책규정 미비로 과거 노동조합법 양벌규정이 위헌판결 (2017헌가30) 받은 만큼, **최저임금법 양벌규정도 조속히 정비**

○ **(개선내용)** (現) 벌금 ^{최대} 2천만원 → (改) 양벌규정에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

◇ 추후 전부처 양벌규정을 전수 조사하여, 행위자 외 법인·사업주를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 폐지** 등도 검토할 계획

2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 구조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는 큰 반면, 기업 위법행위는 억제되지 않으며 피해자 구제는 미흡

⇒ 형벌을 완화하고 ①피해자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거나, ②**과징금 부과**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지능형로봇법의 3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이 조합 이익을 특정인 등에게 부당하게 배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해수부)

대·중·소기업

* 선박화물 손해 보상 등을 위해 선주들이 출자해 만든 보험 조합

- (현황) 조합 임원 등이 법령에 위반하여 조합 이익을 특정인 등에게 부당하게 배당한 경우 징역 ^{최대}7년 등 부과

⇒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보상 없이 임원 등에게 형벌만 부과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7년 · 벌금 ^{최대}7천만원 → (改) 징역 ^{최대}3년 · 벌금 ^{최대}3천만원, 피해자에 대한 손배책임(손해액의 2배이내) 도입

② (지능형로봇법)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부품 등 경미한 사항을 사전 승인(변경인증) 없이 개조한 경우 과징금 부과 (산업부)
대·중·소기업

- (현황)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사항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징역 ^{최대}3년 등 부과

⇒ 안전에 영향이 적은 부품 크기 등 경미한 변경은 생명·신체 등에 대한 위험이 심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형벌은 과도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3년 · 벌금 ^{최대}3천만원 → (改) 형벌 폐지 및 과징금 ^{최대}5천만원*

* 단, 기업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과징금 한도는 벌금(^{최대}3천만원) 대비 상향

3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형벌을 적용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고 사법행정 관련 사회적 비용 과다

⇒ 대체로 생활밀착형인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내 과태료 부과대상 18개 유형 행위 등

➔ 38개 법률, 68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① (자동차관리법)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 등 경미한 자동차 튜닝을 시장·군수 등의 승인 없이 한 경우 과태료 부과(국토부) **일반국민**

○ (현황) 자동차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적재함 등을 튜닝한 경우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와 원상복구명령 등으로 입법목적 달성 가능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 · 벌금 ^{최대}1천만원 → (改) 형벌은 폐지하되, 과태료 ^{최대}1천만원 및 원상복구명령 부과

②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에서 상호명 등 변경신고나 지위승계신고를 안한 경우 과태료 부과(복지부)

소상공인

○ (현황) 숙박업·미용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6개월 등 부과

⇒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는 상호·대표자, 사업자 위치 변경 등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파악을 위한 경미한 사항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6개월 · 벌금 ^{최대}5백만원 → (改) 형벌 폐지 및 과태료 ^{최대}1백만원

③ (채무자회생법) 파산상황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부과(법무부)

취약계층

○ (현황) 파산상황 설명의무 있는 자(채무자 등)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에 관한 필요한 설명을 안할 경우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파산상황 미설명은 비교적 경미한 의무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로도 입법목적 달성 가능(단, 허위 설명은 형벌 유지)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 · 벌금 ^{최대}1천만원 → (改) 형벌

폐지 및 과태료 ^{최대}1천만원 부과

④ (여객자동차법) 차량사고 후 렌트업자가 대차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정비업자 등에게 알선 수수료 제공시 과태료 부과 (국토부) **소상공인**

○ (현황) 차량사고 관련, 렌트업자가 대차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 등에게 알선 수수료를 제공시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렌트사용자에게 렌트업체 선택권한이 존재하며, 사고대차는 보험사 연계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형벌 부과는 과도(중기중앙회)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 · 벌금 ^{최대}1천만원 → (改) 형벌 폐지 및 과태료 ^{최대}5백만원 부과

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체결 시 종사업무 등 단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노동부) **대·중소기업·소상공인**

○ (현황)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장소, 종사업무 등 근로조건 의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 ^{최대}5백만원 부과

⇒ 임금, 근로시간 등 서면교부 의무사항과 달리 종사업무 등 단순명시 사항은 과태료 전환으로 입법목적 달성 가능

○ (개선내용) (現) 벌금 ^{최대}5백만원 → (改) 형벌 폐지, 과태료 ^{최대}5백만원 ※ 서면교부 의무 위반은 형벌(벌금 ^{최대}5백만원) 유지

⑥ (비료관리법) 습기, 마찰 등으로 비료 포장지 제품명, 제조사 등 경미한 표시사항이 훼손된 경우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

중소기업

○ (현황)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제품명, 제조사 등 경미한 표시 사항이 훼손된 비료를 판매한 경우 징역 ^{최대}2년 등 부과

⇒ 표시사항이 훼손된 비료 판매 행위를 미허가 원료를 포함한

비료 판매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2년·벌금 ^{최대}2천만원 → (改)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폐지 및 과태료 ^{최대}2백만원 부과**

⑦ (수산물유통법) 수산물 유통업자 등이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해수부) **소상공인**

- **(현황)** 수산물유통업자 등이 수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하는 **이력추적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단순 행정상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부과는 **과도**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벌금 ^{최대}1천만원, → (改) **과태료 ^{최대}1천만원**

⑧ (물환경보전법) 식품공장 등에서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를 **미장착**한 경우 **과태료**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 **(현황)**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유량)계***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벌금 ^{최대}1백만원 부과

* 전기사용량(적산전력계 기록) 및 유량 확인을 통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여부 확인

⇒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작동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보조장치**인 만큼, 형벌 부과는 **과도**한 측면

- **(개선내용)** (現) 벌금 ^{최대}1백만원 → (改) **과태료 ^{최대}5백만원 부과**

⑨ (신용정보법) 개인신용평가사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할 의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융위) **금융기관**

- **(현황)** 개인신용평가사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을 경우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상 기록보존의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법(과태료 부과) 등과의 형평성 고려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 · 벌금 ^{최대}1천만원 → (改) 형벌폐지 및 과태료 ^{최대}1천만원 부과

[참고] 주요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과제(20개) * 밑줄 : 既 발표 과제(입법 미완료)

분야	법령	개선사항
① 식품·공중위생	공중위생관리법 (복지부)	숙박업·미용업 상호명 변경 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6개월 → 과태료 최대1백만원
	식품위생법 (식약처)	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3년 → 징역 최대1년
	식품위생법 (식약처)	식품접객업 등이 폐업하면서 이를 미신고한 경우 징역 최대3년 → 징역 최대1년
② 시설운영 관리	자동차관리법 (국토부)	트럭집칸(적재함)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1년 → 과태료 최대1천만원+원상복구명령
	여객자동차법 (국토부)	차량사고 후 렌트업자가 대차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정비업자에게 알선 수수료 제공시 징역 최대1년 → 과태료 최대5백만원
	여객자동차법 (국토부)	버스업체가 인가받지 않고 노선 변경 등을 한 경우 벌금 최대1천만원 →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시 벌금
	옥외광고물법 (행안부)	신고하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벌금 최대5백만원→과태료 최대5백만원
③ 농·어업	비료관리법 (농식품부)	습기, 마찰 등으로 비료 포장지 제품명, 제조사 등 경미한 표시사항 훼손된 경우 징역 최대2년 → 과태료 최대2백만원
	수산물유통법 (해수부)	수산물 유통업자 등이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1년→과태료 최대1천만원
	내수면어업법 (해수부)	하천의 일부를 어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1년→과태료 최대5백만원
④ 환경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페인트 제조업체 등이 장·검사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한 경우 징역 최대3년→행정제재 미이행시 형벌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5년 → 과태료 최대5백만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시설 변경에 따라 보험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1년 → 영업정지 등 先행정명령 부과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폐기전수거업체 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2년 → 과태료 최대1백만원
	환경범죄단속법 (환경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금속기동업체 등이 분쇄기 등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 징역 최대6개월 → 벌금 최대5백만원
⑤ 노동	최저임금법 (노동부)	최저임금 미준수 관련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사업주에 대해 벌금 최대2천만원 → 형벌 면제(면책규정 마련)
	근로기준법 (노동부)	기업이 근로계약 체결 시 종사업무 등 단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벌금 최대5백만원→과태료 최대5백만원
⑥ 기타 (신산업·금융 등)	지능형로봇법 (산업부)	배달로봇 등의 부품 등 경미한 사항을 사전 승인 없이 개조한 경우 징역 최대3년 → 과징금 최대5천만원
	신용정보법 (금융위)	개인신용평가사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1년→과태료 최대1천만원

◇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행정상 목적달성이 가능함에도 의무위반에 대해 곧바로 형벌 적용하여 과잉처벌 관행 지속

⇒ 형벌 필요성이 있더라도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제재·계도를 통해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로 전환

➔ 9개 법률, 18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①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가격 등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경우 시정조치명령 후 형벌 부과 (공정위) **대기업·중견기업**

○ (현황)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가격 등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경우 ①징역 ^{최대}3년 등 바로 부과(124조 1항 1호)하거나, ②시정조치명령 후 이를 불이행시 형벌(징역 ^{최대}2년) 부과(125조 1항 1호)

⇒ 시정조치명령 등 행정제재를 통해 입법목적 달성 가능(경총)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3년 · 벌금 ^{최대}2억원 → (改) 시장지배력남용에 대한 직접처벌 조항(124조 1항 1호)은 폐지하고, 시정조치명령 부과 후, 이를 불이행시 형벌 부과하는 조항만 유지

② (화학물질관리법) 페인트 제조업체 등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 물질 취급 시설(보관창고) 운영시 개선명령 부과 후 형벌 부과 (환경부) **중소기업**

○ (현황) 페인트 제조업체 등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창고 등)을 운영한 경우 징역 ^{최대}3년 등 부과

⇒ 설비설치 및 시설보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형벌부과보다는 개선명령 부과가 입법목적에 부합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3년 · 벌금 ^{최대}5천만원 → (改) 개선

명령 부과 후 불이행시 형벌 부과

③ (생계형적합업종법) 대기업 등이 서점업 등 생계형적합업종을
인수·개시·확장한 경우 시정명령 후 형벌 부과 (중기부) **대기업·중견**

- **(현황)** 대기업·중견기업이 서점업, 두부제조업 등 생계형적합
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 징역 ^{최대}2년 등 부과
⇒ 위반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가 존재함에도,
형벌까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한 중복처벌(중견기업연합회)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2년 · 벌금 ^{최대}1억5천만원 → (改) 행
정제재 미이행시 형벌 부과

④ (항만법)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임대한 경우 시정명령 후 형벌
부과 (해수부) **대·중·소기업**

- **(현황)** 전용(專用) 목적으로 항만시설 등을 취득한 자가 허
가 없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시정명령으로 항만시설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 가능하며,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부과가 바람직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 · 벌금 ^{최대}1천만원 → (改) 시정명
령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

⑤ (여객자동차법) 버스업체 등 운송사업자가 인가받지 않고 노선
등 사업계획 변경한 경우 시정조치명령 후 형벌 부과 (국토부)
대·중·소기업

- **(현황)** 여객운송사업자가 노선의 신설 및 변경, 증차 등 사업
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벌금 ^{최대}1천만원 부과
⇒ 인가받지 않은 운수사업계획은 승객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형벌 부과가 필요하나, 시정조치명령을 통해 입법목적 달성 가능
- **(개선내용)** (現) 벌금 ^{최대}1천만원 → (改) 시정조치명령을 부과한
후, 여전히 미이행시 형벌 부과

◇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 **준치 필요성**이 낮아 **형벌을 폐지**하는 등 **합리화**

➔ 10개 법률, 18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① (식품위생법) 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현재(징역 ^{최대}3년) 대비 **형벌 완화** (식약처) **중소기업·소상공인**

○ **(현황)** 급식소(일반 50인·산업체 100인 이상) 등을 운영시 **조리사·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징역 ^{최대}3년 등 부과

⇒ 급식소 **위생 관리** 등 위해 **조리사·영양사 고용**이 **필수적**이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사용(44조 1항 3호), 식중독 원인 조사 거부(86조 2항) 등과 **동일한 형량부과**는 **과도**한 측면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3년 · 벌금 ^{최대}3천만원 → (改) 징역 ^{최대}1년 · 벌금 ^{최대}1천만원 부과

② (소음·진동관리법) 금속가공업체 등이 분쇄기 등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 **형벌 완화** (환경부) **중소기업**

○ **(현황)** 금속가공업체 등이 분쇄기·압축기 등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시도지사 등에게 **미신고*** 후 조업한 경우 징역 ^{최대}6개월 등 부과

* 다만, 학교, 주택지역, 도서관 주변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시장 등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미신고 조업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환경 관련 **인력·전문성**이 **부족**하여 신고절차 등을 인지하지 못한 **영세 사업자**의 **형벌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6개월 · 벌금 ^{최대}5백만원 → (改) 징역 **폐지**, 벌금 ^{최대}5백만원 ※단, 거짓 신고는 형벌 유지

③ (해양산업클러스터법)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형벌 완화(해수부) **대·중·소기업**

- **(현황)** 해양산업클러스터*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징역 ^{최대}5년 등 부과

* 유후 항만시설에 요트·마리나, 해양 R&D 등 해양연관산업이 집적·융복합을 위해 조성

⇒ 항만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유사 법령인 항만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벌 수준을 완화할 필요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5년 · 벌금 ^{최대}5천만원 → (改) 징역 ^{최대}2년 · 벌금 ^{최대}2천만원 부과

④ (외국환거래법)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형벌 폐지 (기재부) **은행**

- **(현황)** 고객의 외국환거래의 합법 여부 미확인시 징역 ^{최대}1년

⇒ 외국환거래 확인의무는 **절차적 사항**으로 형벌 부과 필요성이 낮으며*, **영업정지** 등을 통해 위법행위 억제가 가능

* 현재까지 확인의무 위반을 사유로 형벌이 부과된 사례 없음

-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 · 벌금 ^{최대}1억원 → (改) **형벌 폐지, 과징금 부과***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40 이하

IV. 향후 계획

□ 1차 개선안 일괄개정절차 진행 → 정기국회에 입법안 제출

□ 10월 이후 추가 개선방안 마련

1. 경제형벌 정의

□ 기업·국민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징역 등 형벌을 의미

○ 살인·강도·절도 등 반윤리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형벌과 구분

2. 경제형벌 입법심사 관련 일반 원칙

①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 주의·감독의무를 다하는 등 주관적 귀책사유(고의·과실 등)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양벌규정 등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② 시대변화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필요·과도해진 것은 아닌지?

○ 기술변화, 국민인식 변화 등으로 입법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관계 법령은 개정되지 않아 시의성이 낮아진 경우

* (예시) 형벌에서 중대범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당이득액·손해유발액 등 금액 기준이 오랫동안 고정되어 물가 상승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③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 국가의 주도적 개입시 오히려 활발한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경우

④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형벌제외)?

○ 다른 수단으로는 법익을 보호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보충적으로 형사제재 수단을 개입하는 형벌의 특성에 어긋나는 경우

* 행정형벌의 목적·기능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사후적 조치 → 법률 내 구비된 행정조치(시정명령 등) **부과만**으로 행정상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 원칙상 형벌 폐지

↳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벌이 공존하는 경우 원칙상 형벌 폐지

- ⑤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형량조정)?
-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정당성과 균형을 현저히 잃거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 * 동일유사한 행위에 대한 타 법률 내 형벌보다 과중한 경우 적정 수준으로 형벌 완화
- ⑥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 각 국의 사전규제, 사후처벌, 기업문화, 비형벌적 제재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국내 형벌조항이 과도한 경우

3. 유형별 세부 정비기준

① 양벌규정 정비 등 선의의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

▶ (문제점)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양벌규정 등에 의해 사업주를 처벌하여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보 등을 유발

- 행위자 외에 법인·사업주를 처벌하면서까지 위반행위를 예방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벌규정 폐지**
- 양벌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면책규정 마련**
- 양벌규정 내 법인 대비 **사업주 개인에 대한 책임은 완화**
- * (예시) 양벌규정 적용시 법인은 벌금 최대10억, 개인은 최대1억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적극적 위반행위(거짓·부정 등)로 **구성요건 강화**

②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 (문제점) 형사처벌(징역·금고 등) 중심의 경제형벌 구조로 사업주 등의 형사리스크는 큰 반면, 피해자 구제는 미흡

- 사업주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 및 위반행위의 실효적 예방을 위해 형벌 중심의 책임구조를 **금전적 책임구조로 전환**
- * 미국 등 선진국도 금전적 처벌(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중심으로 전환

- 위반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의 3~5배 내외 범위) 도입
- 행정상 의무이행 강제를 위한 간접적 압박수단으로 부과되는 형벌은 완화·폐지하고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③ 경미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 → 과태료 전환

▶ (문제점)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경미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형벌을 적용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고 사법행정 관련 사회적 비용 과다

- 경미한 행정상 의무위반*(보존·표시·보고의무 등)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은 원칙적으로 행정제재(과태료 등)로 일괄 전환

* 「법령입안심사기준」 내 과태료 부과대상 18개 유형 행위

행정상 의무위반의 중대성 판단기준(예시)

- (생명·안전 관련성) 의무위반으로 공공의 생명·안전을 직접 위협하는지 여부
- (행위의 적극성) 위반행위가 의무·명령의 소극적 거부·방해·기피인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 의무위반인지 여부
- (진입규제 수준) 진입규제로 신고제 등 경미한 수준의 규제를 규정하는지, 허가·등록 등 상대적으로 강한 수준의 규제를 규정하는지 여부

- 원칙상 벌금과 동일한 액수의 과태료로 전환하되, 구체적 액수의 타당성은 의무의 성격, 유사 법률 등을 참고하여 결정

④ 행정제재 중심 先행정조치-後형벌 구조로 전환

▶ (문제점)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행정상 목적달성이 가능함에도 의무위반에 대해 곧바로 형벌 적용하여 과잉처벌 관행 지속

- 행정조치(시정명령 등) 후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벌 부과로 행정상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 先행정조치-後형벌 구조로 전환

* 다만,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부과만으로는 의무이행 확보가 곤란하여

중국적으로는 형벌 부과를 통한 의무이행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

1. 검토 배경

-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배임죄 요건>

- ▶ 「형법」 제355조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임죄 개선 의견>**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배임죄 폐지 또는 배임죄 구성요건 개선, 특별배임죄 폐지 등
- ▶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배임죄 폐지 및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 ▶ 【한국경영자총협회】 형법상 배임죄 축소,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가중처벌 폐지 등
- ▶ 【대한상공회의소】 배임죄 가중처벌 규정 삭제 및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 법무부는 배임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 전환 및 처벌이 필요한 범죄 유형화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25. 8월경부터 배임죄 판례 약 3,300건 분석

2. 판례 중간 분석 결과

- 최근 5년(2020년~2024년) 동안 선고된 1심 판결문 및 약식명령 약 3,300건 분석한 결과 약 32개 정도 범죄 유형으로 분류 가능

※ 최근 5년 전·후의 판례까지 분석하면 배임죄 범죄 유형 상당히 추가 가능

<최근 판례상 배임죄로 의율된 10대 유형>

1.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이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 (42.7%)
2. 납품대금, 용역수수료, 경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계약 (10.5%)
3. 회사의 중요 기술, 영업비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9.4%)
4.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고 제3자에게 매도(부동산 이중매매) (7.5%)
5.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지급일에 갯돈 미지급 (5.5%)
6. 재건축·재개발조합장 등이 무단으로 재산 처분, 과다한 용역계약 체결 등 유형 (4.3%)
7.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 지원하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 (3.6%)
8.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해주는 등 불량·부실 대출 (3.3%)
9. 채무자가 담보물 보관의무를 위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는 등의 유형 (3.2%)
10. 종종 대표자가 무단으로 종종 토지나 선산을 매도하는 등의 유형 (1.4%)

- 판례 분석 결과, 배임죄는 기업의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의율되고 있고, 그 외 공공 영역 및 민사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유형도 매우 다양함을 확인
- 한편, 배임죄는 기업과 무관한 민생 분야, 사업기회 유용·가상화폐 범죄 등 새로운 경제범죄 유형에도 적용

3. 배임죄 개선 방안

① 배임죄 폐지 추진의 필요성

-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기업 외 민사상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의율
- 법률전문가가 아닌 기업, 단체, 공무원,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는 것이 매우 곤란

② 대체입법 마련의 필요성

- 다만,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영업비밀 유출 등 오히려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와 같이 배임죄로 의율되어 온 범죄 유형 중 일부는 여전히 처벌 필요

※ 총수일가·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 배임죄로 의율되어 기소된 사례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

- 따라서, 배임죄 폐지 시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 필요

③ 배임죄 개선 방향 : 배임죄 폐지 및 대체입법 마련 추진

- **(개요)** 기업의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입법 함께 마련
- **(대체입법 내용)** 대체입법은 주체 및 행위 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 예정 ⇨ 요건 명확화로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민사책임 전환 등 형사처벌 범위 축소
 - ※ ① 배임 관련 특별법을 마련하여 기존 배임죄의 주체·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 ② 각 개별법에 구체화된 배임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 **(기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입법 마련
 - ※ 대체입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고, 배임행위를 유형화한 입법례도 찾기 어렵지만, 전문가 자문·판례 분석 등을 토대로 신속히 입법화 가능하도록 추진

[첨부] 판례 분석 결과 배임죄 주요 유형 (2020년~2024년)

<기업과 관련된 배임죄 유형>

1.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이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
2.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 지원하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
3. 회사 자금을 부실기업에 대여해주거나,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
4.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 발행
5.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해주는 등 불량·부실 대출
6. 납품대금, 용역수수료, 경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계약
7. 회사 자산을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부
8. 신주나 전환사채 등을 부당하게 저가로 발행하고 배정
9. 회사를 매입하면서 매입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LBO)
10. 경영권 방어나 유지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사용
11.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 또는 고가 매수
12. 계약금을 일부만 받고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유형
13. 회사의 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유형
14. 이사가 회사에게 손해를 미칠 사항을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손해를 가하는 유형
15. 경리가 회계장부 조작하여 과다한 월급 수령하는 등 회계책임자의 부적정 회계 처리
16. 펀드매니저가 고객의 매수주문 없이 고객예탁금으로 주식 무단 거래
17. 대표에게 손해배상 소송 사실 미고지 등 내부 관리 부실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유형
18. 회사의 중요 기술, 영업비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기업 외 기관·단체와 관련된 주요 유형>

1. 종중 대표자가 무단으로 종중 토지나 선산을 매도하는 등의 유형
2. 학교법인 이사장이 무단으로 학교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유형
3. 재건축·재개발조합장 등이 무단으로 재산 처분, 과다한 용역계약을 체결 등의 유형
4. 재단 형태로 모은 기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유형
5.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가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유형
6. 교회 담임목사 등이 무단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유형
7. 공무원이 필요 없는 물품을 고가에 구입하는 등 직무 관련 부당행위 유형

<민사적 신임관계 관련 주요 유형>

1. 채무자가 담보물 보관의무를 위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는 등의 유형
2.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등의 유형
3. 영업허가 등의 권리를 수탁받은 자가 무단으로 권리 처분하는 등의 유형
4.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고 제3자에게 부동산 다시 매도(부동산 이중매매)
5. 권리, 동산 등 이중매매 유형
6.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지급일에 계원에게 갯돈 미지급
7. 차량 지입회사 대표가 임의로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유형

참고 3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세부내용

※ : 본문 포함 과제

	형벌규정	행위(구성요건)	(現) 형벌		개선안
			징역	벌금(원)	

1 국토교통부

1	간선급행버스법 (§40-②-4)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천만	(1) 신고사항(경미한 위반) 형벌폐지 → 과태료 전환 (2) 인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2	여객자동차법 (§91-5)	부정한 금품수수 등 불법 자동차대여사업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3	여객자동차법 (§92-3)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1천만	(1) 신고사항(경미한 위반) 형벌폐지 → 과태료 전환 (2) 인가·등록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4	여객자동차법 (§92-13)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5	여객자동차법 (§92-14)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6	여객자동차법 (§92-15)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7	자동차관리법 (§81-19)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경우	1년	1천만	경미한 튜닝 미승인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 원상복구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8	주차장법 (§29-①-1)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	3년	5천만	벌금 완화(5천만원→3천만원) * 징역 3년은 현행유지
9	주차장법 (§29-①-2)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3년	5천만	벌금 완화(5천만원→3천만원) * 징역 3년은 현행유지
10	주차장법 (§29-①-3)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3년	5천만	벌금 완화(5천만원→3천만원) * 징역 3년은 현행유지
11	주차장법 (§29-①-4)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년	5천만	벌금 완화(5천만원→3천만원) * 징역 3년은 현행유지

2 해양수산부

12	내수면어업법 (§25-②-5)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13	내수면어업법 (§25-②-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형벌규정	행위(구성요건)	(現) 형벌		개선안
			징역	벌금(원)	
14	내수면어업법 (§25-②-7)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15	선원법 (§175-①)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함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16	선주상호 보험조합법 (§58-1)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7년	7천만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 손해배상책임 도입
17	선주상호 보험조합법 (§58-3)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을 때	7년	7천만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 손해배상책임 도입
18	수산물유통법 (§61-1)	자격없는 자를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19	수산물유통법 (§61-3)	자격없는 산지경매사를 임명한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20	수산물유통법 (§61-4)	자격없는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않은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21	수산물유통법 (§61-6)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22	수산물유통법 (§61-7)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23	수산물유통법 (§61-8)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24	수산물유통법 (§61-9)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25	수산부산물법 (§20-②-1)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3년	3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26	신항만건설법 (§2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	1년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명령 부과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27	양식산업발전법 (§80-2)	출입 검사 등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28	염업조합법 (§58-6)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의 미비치	3년	3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29	염업조합법 (§58-7)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3년	3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30	염업조합법 (§58-8)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3년	3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형벌규정	행위(구성요건)	(現) 형벌		개선안
			징역	벌금(원)	
31	지능형해상 교통정보법 (§29-③-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년	2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32	지능형해상 교통정보법 (§29-④)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시물을 훼손한 자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33	항만법 (§110-2)	전용 목적의 토지 또는 항만시설 취득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	1년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명령 부과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34	항만법 (§110-6)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1년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명령 부과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35	해양산업 클러스터법 (§40-①-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7년	7천만	형벌완화 * 유사입법례(항만법 3년, 3천만원)
36	해양산업 클러스터법 (§40-①-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7년	7천만	형벌 완화 * 유사입법례(항만법 3년, 3천만원)
37	해양산업 클러스터법 (§40-②)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	5년	5천만	형벌 완화 * 유사입법례(항만법 2년, 2천만원)
38	해양생명 자원법 (§40)	승인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5년	5천만	형벌 완화 * 유사입법례(생명연구자원법 3년, 3천만원)
39	해양수산 과학기술육성법 (§27-②)	신기술 제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신기술 인증 홍보를 한 경우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2백만원) * 개선 시 유사입법례(보건의료기술진흥 법) 일관된 기준으로 개정 필요
40	해양이용영향 평가법 (§52-③-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41	해양이용영향 평가법 (§52-③-3)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미제출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42	해양폐기물관리법 (§37-8)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 행정처분 근거규정 신설
43	해양환경관리법 (§129-②-15)	공무원의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1년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형벌규정	행위(구성요건)	(現) 형벌		개선안
		징역	벌금(원)	

③ 산업통상자원부

44	광산안전법 (§25-5)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된 때와 완료 후 일정 기간마다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 * 과태료 : 1차(50만원), 2차(70만원), 3차(100만원) ※ 건설기계관리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 준용
45	오존층보호법 (§30-2)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x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46	유통산업발전법 (§49-①)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10년	1억	형량완화 * 징역 최대10년 → 징역 최대5년 벌금 최대1억원 → 벌금 최대1천만원
47	유통산업발전법 (§49-③)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48	유통산업발전법 (§50)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	x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49	자유무역지역법 (§61-6)	세관장에 의하여 반입반출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	-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 과실로 인한 경우 과태료 감경 신설
50	전력기술관리법 (§29-9)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 양수하거나 법인 간 합병을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2백만원)
51	지능형로봇법 (§47-②-4)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3년	3천만	형벌 폐지 → 과징금 전환(5천만원)
52	지능형로봇법 (§47-②-5)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	3년	3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53	지능형로봇법 (§47-③-4)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54	집단에너지사업법 (§56-1)	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 개설 또는 증설한 경우	2년	2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 우선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55	집단에너지사업법 (§56-2)	정해진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업을 미개시	2년	2천만	형벌조항 삭제
56	집단에너지사업법 (§56-4)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열 공급을 거부한 경우	2년	2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 우선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57	집단에너지사업법 (§57-1)	열 생산시설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 우선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형벌규정	행위(구성요건)	(現) 형벌		개선안
		징역	벌금(원)	

4 환경부

58	가축분뇨법 (§51-2)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퇴비·액비를 유출·방치하거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고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 또는 금지된 행위로 가축분뇨·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	X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59	가축분뇨법 (§51-6)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	X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60	가축분뇨법 (§51-7)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X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61	대기관리권역법 (§46-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미부착 등	3년	5천만	형량 완화 * (改) 벌금 최대3천만원
62	대기관리권역법 (§46-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	3년	5천만	형량 완화 * (改) 벌금 최대3천만원
63	대기관리권역법 (§46-3)	외부감측량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3년	5천만	형량 완화 * (改) 벌금 최대3천만원
64	대기환경보전법 (§92-3)	비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	X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65	대기환경보전법 (§92-3의2)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X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66	대기환경보전법 (§92-4의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X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67	대기환경보전법 (§92-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X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68	동물원수족관법 (§30-③-3)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자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 등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X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69	동물원수족관법 (§30-③-4)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X	5백만	형량 완화 * (改) 벌금 최대3백만원
70	물환경보전법 (§79-2)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X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71	물환경보전법 (§80-1)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X	1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형벌규정	행위(구성요건)	(現) 형벌		개선안
			징역	벌금(원)	
72	소음·진동관리법 (§58-1)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6개월	5백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폐지, 벌금으로 전환 ** 거짓이나 부정신고는 기존 형벌 유지
73	화학물질관리법 (§59-7)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년	5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개선명령 부과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74	화학물질관리법 (§59-8)	취급시설 검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년	5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개선명령 부과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5 금융위

75	신용정보법 (§50-④-5)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의무 불이행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	-----------------	--	----	-----	----------------------

6 보건복지부

76	공중위생관리법 (§20-③-1)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5백만	형벌폐지 → 과태료 전환(100만원)
77	공중위생관리법 (§20-③-2)	공중위생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5백만	형벌폐지 → 과태료 전환(100만원)

7 농림축산식품부

78	농약관리법 (§35-1)	품목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79	농약관리법 (§35-4)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80	비료관리법 (§28-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 등을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2년	2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2백만원) * 1회 1백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백만원
81	식품산업진흥법 (§36-①-3)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년	3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표시변경명령 부과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82	축산법 (§54-7)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83	축산법 (§54-8)	조치명령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형벌규정	행위(구성요건)	(現) 형벌		개선안
		징역	벌금(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

84	식품위생법 (§96)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조리사 고용의무 위반 행위	3년	3천만	형량 완화 * (現) 징역 최대 3년, 벌금 최대 3천만원 → (後)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천만원
85	식품위생법 (§96)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영양사 고용의무 위반 행위	3년	3천만	형량 완화 * (現) 징역 최대 3년, 벌금 최대 3천만원 → (後)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천만원

9 고용노동부

86	가사근로자법 (§26-③-2)	근로계약에 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 서면교부 의무 위반은 형벌 유지
87	근로기준법 (§114-1)	근로조건의 명시	-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 서면교부 의무 위반은 형벌 유지
88	진폐예방법 (§34-2)	근로자 채용, 이직, 정기, 임시에 실시하는 건강진단 결과 진폐소견자 발생 시 노동부장관에게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하여야하나 미제출	-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89	최저임금법 (§28-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 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	3년	2천만	면책규정 신설(양벌규정(제30조) 내) * 유사 규정 위헌결정 취지 고려
90	최저임금법 (§28-②)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미이행	2년	1천만	면책규정 신설(양벌규정(제30조) 내) * 유사 규정 위헌결정 취지 고려
91	최저임금법 (§28-③)	임금지급 주기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조 등의 의견을 듣지 않음	-	5백만	면책규정 신설(양벌규정(제30조) 내) * 유사 규정 위헌결정 취지 고려

10 법무부

92	채무자회생법 (§658)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 적극적으로 허위설명을 한 경우 형벌 유지
----	---------------	--	----	-----	--

형벌규정	행위(구성요건)	(現) 형벌		개선안
		징역	벌금(원)	

11 기획재정부

93	공공차관법 (§24-1)	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또는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
94	공공차관법 (§24-2)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공차관의 도입·사용 또는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불이행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
95	관세법 (§276-③-2)	장부 등 보관	X	2천만 (과실 3백만)	과실범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이하)
96	관세법 (§276-③-3)	허위신고죄 등 (감면물품 등 용도외 사용)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사용 또는 양도, 관세면제물품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사용 또는 양도		2천만 (과실 3백만)	과실범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이하)
97	관세환급 특례법 (§23-④)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등 미제출	X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상향) *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 관세법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형벌 폐지 및 과태료 既전환(23년)
98	외국환거래법 (§29-①-2)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년	1억	형벌 폐지
99	조세범처벌법 (§12-4)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	2년	2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
100	FTA 관세법 (§44-②-2)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X	2천만 (과실 3백만)	과실범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이하)
101	FTA 관세법 (§44-②-5)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X	2천만 (과실 3백만)	과실범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이하)
102	FTA 관세법 (§44-③)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X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이하)

	형벌규정	행위(구성요건)	(現) 형벌		개선안
			징역	벌금(원)	

12 행정안전부

103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법 (§36-③)	풍수해보험사업의 구분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x	5백만	소액 벌금의 과태료(5백만원) 전환
-----	----------------------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104	공정거래법 (§124-①-1)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5조 제1항 제1호 위반)	3년	2억	(1) 직접 처벌규정(§124-①-1) 폐지 (2) 시정조치 후 불이행시 처벌규정(§125-①-1)은 유지
105	공정거래법 (§124-①-1)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	3년	2억	(1) 직접 처벌규정(§124-①-1) 폐지 (2) 시정조치 후 불이행시 처벌규정(§125-①-1)은 유지
106	공정거래법 (§124-①-1)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5조 제1항 제3호 위반)	3년	2억	(1) 직접 처벌규정(§124-①-1) 폐지 (2) 시정조치 후 불이행시 처벌규정(§125-①-1)은 유지
107	공정거래법 (§124-①-1)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5조 제1항 제4호 위반)	3년	2억	(1) 직접 처벌규정(§124-①-1) 폐지 (2) 시정조치 후 불이행시 처벌규정(§125-①-1)은 유지
108	공정거래법 (§124-①-1)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5조 제1항 제5호 위반)	3년	2억	(1) 직접 처벌규정(§124-①-1) 폐지 (2) 시정조치 후 불이행시 처벌규정(§125-①-1)은 유지

14 중소벤처기업부

109	생계형적합업종법 (§15-1)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한 자	2년	1억 5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110	전통시장법 (§72-①)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년	3천만	先시정명령-後형벌 부과